

고문방지위원회 6차 대한민국 보고서 심의  
시민사회단체 공동 보고서

시민사회 주제별 보고서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

대한민국  
2024년 6월

-

참여단체

- 4.9통일평화재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장애포럼

연락처

- 서채완([chaewan.s@minbyun.or.kr](mailto:chaewan.s@minbyun.or.k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최한별([hbchoi@thekdf.org](mailto:hbchoi@thekdf.org)) / 한국장애포럼

# 목차

<b>I. 서론</b> .....	<b>3</b>
<b>II. 배경</b> .....	<b>3</b>
<b>III. 법적체계</b> .....	<b>5</b>
<b>IV. 주요 이슈</b> .....	<b>6</b>
A. 강제동원.....	6
B. 일본군 성노예제.....	8
C. 제주 4.3 학살.....	10
D. 국가폭력.....	11
E. 해외입양.....	13
F. 아동학대.....	15
<b>V.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의 권리</b> .....	<b>16</b>
<b>VI.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b> .....	<b>18</b>
A. 구제를 받을 권리(Right to redress)와 국가의 의무.....	18
B. 사과, 기억과 추모.....	19
C. 효과적인 진정 및 수사 메커니즘.....	20
D. 구제를 가로막는 제도.....	22
E. 책임.....	25
F. 시설화 정책.....	26

## I. 서론

1. 고문방지협약 일반논평 제3호가 강조하듯이,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보장은 협약에 따른 고문 및 학대 피해자가 가진 구제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sup>1</sup>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과거사’와 ‘시설수용’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 자의적 구금, 각종 비인도적 처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문 및 학대행위이다. 과거사와 시설수용의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고,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재활 등 구제를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보고서를 작성한 단체들은 과거사와 시설수용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이다. 단체들은 고문방지위원회의 제6차 대한민국 보고서심의에 앞서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의 현황을 전달하고, 국가의 의무위반을 보고하고자 한다. 나아가 단체들은 고문방지위원회에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권고를 제안하고자 한다.

## II. 배경

3. 20세기 동안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 점령 시기, 한국전쟁 시기, 군사독재 및 권위주의적 정부시기를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형태의 인권침해 및 국제인도법위반이 발생하였고, 많은 경우 침해 및 위반은 대규모 또는 장시간에 걸쳐 자행 되어왔다.

4.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2022년 6월 한국을 방문하여 지속된 심각한 인권침해 및 인도법위반 사안들을 보고받고 조사했다. 일제강점시기에 발생한 일본에 의한 성노예 문제, 강제동원 문제, 한국전쟁시기 발생한 민간인 학살 문제, 독재 및 권위주의적 정부시기에 발생한 조작간첩,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사건과 형제복지원, 서산개척단, 삼청교육대, 선감학원 등 시설 및 수용소에서 발생한 각종 고문 및 학대 문제, 정부의 주도 아래 이뤄진 해외입양문제 등이 조사되었다. 특별보고관은 2023년 7월 6일 방문조사 보고서를 통해 위 문제들이 인권침해임을

---

<sup>1</sup> Committee against Torture, General comment no. 3: Implementation of article 14 by State parties, CAT/C/GC/3, 13 December 2012, para. 2.

확인하고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수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sup>2</sup>

5. 앞서 언급된 과거사 문제 중에서도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등 시설수용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은 국제적<sup>3</sup>으로도, 국내적으로도<sup>4</sup> 확인되었다. 하지만 시설수용 정책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시설 수용이 고문과 학대의 온상임을 인지하면서도 그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여전히 고문 및 학대 행위의 장본인이 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의무를 방임함으로써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과거 ‘부랑인 시설’로 분류되는 노숙인 시설을 비롯해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장애인 요양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용시설에 약 13만여 명이 수용되어 있으며,<sup>5</sup> 대부분이 강제적/자의적 구금의 피해자이다.<sup>6</sup>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 수용 시설 피해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자의적 구금, 사회로부터의 배제, 폭력과 트라우마 등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므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배, 보상 의무가 한국 정부에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덜 가치있는 사람들’로 누군가를 분류하고, 이들을 한곳에 몰아 넣는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설수용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반복될 것이다.

7. 한편 아동학대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대적 과제이다. 일반논평 제3호가 강조하듯이 아동을 포함한 취약한 집단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sup>7</sup> 시설수용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의 문제는 과거사의 문제이자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수차례 심각한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이

---

<sup>2</sup>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Fabián Salvioli, A/HRC/54/24/Add.1, 6 July 2023, para. 6-10.

<sup>3</sup> Ibid, para. 9.

<sup>4</sup> Hankyoreh. "S. Korean panel recognizes state's culpability in past abuses at Brothers Home facility", 25 Augst 2022.,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56196](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56196).

<sup>5</sup> 노숙인 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수용자 약 6,400여 명(2021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28,565명, 정신장애인수용시설 15,250명, 정신의료기관 약 75,000여 명(2022년 기준)

<sup>6</sup> 2017년 중증장애인 시설 대상 조사(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면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장애인이 67.9%에 달했다. 또한,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설 거주 장애인 10명 중 4명이 시설 입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 입소가 자발적/필요에 따른 적합 판단에 따른다기 보다 강제적/자의적임을 드러낸다.

<sup>7</sup> Committee against Torture, General Comment No. 2: Implementation of Article 2 by States parties CAT/C/GC/2, 24 January 2009, para. 20-24.; Committee against Torture, General comment no. 3: Implementation of article 14 by State parties, CAT/C/GC/3, 13 December 2012, para. 36.

발생했음에도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III. 법적 체계

8. 과거사 문제는 국가기관에 의한 직, 간접적 신체적, 정신적 고문, 시설 또는 수용소에 대한 구금을 수반한 국가폭력으로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하는 고문 및 학대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고문방지위원회가 채택<sup>8</sup>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sup>9</sup>이 규정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활, 만족, 재발방지 등이 국가의 의무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9. 한편 과거사 문제 중에서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고문 및 학대행위이다. 다른 국가 또는 사인<sup>10</sup>에 의한 고문 및 학대행위의 피해자에게도 국가는 협약에 따른 의무로서 구제를 보장해야하고, 그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sup>11</sup>

10. 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시설수용의 문제는 장애인권리위원회<sup>12</sup>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sup>13</sup>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이다.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시설화의 문제는 사실상 수용자의 법적능력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폭력의 한 형태라고 규정될 수 있다.

11. 당사국은 협약에 따라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고문 및

---

<sup>8</sup> Committee against Torture, General comment no. 3: Implementation of article 14 by State parties, CAT/C/GC/3, 13 December 2012, para. 6.

<sup>9</sup> General Assembly,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ES/60/147, 15 December 2005

<sup>10</sup> Committee against Torture, General comment no. 3: Implementation of article 14 by State parties, CAT/C/GC/3, 13 December 2012, para. 6.

<sup>11</sup>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Fabián Salvioli, A/HRC/54/24/Add.1, 6 July 2023, para. 84.

<sup>12</sup> See e.g. CRPD/C/KOR/CO/1, paras 26 and 38; CRPD/C/GC/1, paras 40, 41 and 46; CRPD/C/GC/5; CRPD/C/5 para 7

<sup>13</sup>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Manfred Nowak, Addendum. Study on the phenomena of torture,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the world, including an assessment of conditions of detention”, A/HRC/13/39/Add.5, 5 February 2010.

학대행위를 예방해야할 의무가 있으며,<sup>14</sup>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은 대한민국에서 협약에 따른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장 소외된 집단 중 하나에 해당한다.

## IV. 주요 이슈<sup>15</sup>

### A. 강제동원

12. 일본은 1931년 만주침략에 이어 1937년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 타이완, 사할린, 남태평양 등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노무동원계획’을 세웠다. 그에 따라 조선에서는 연 60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노무자, 군인·군속, 일본군‘위안부’ 등의 형태로 강제동원되었다.

13. 일본의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 강제노동 문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되었는데, 1996년 이후 조약 및 권고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일본 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하였다.

14.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어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노동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위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며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 위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15.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피고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은 모두 피해자들의 교섭요구에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의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피고들은 이의를 신청하였고, 대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현재까지도 미루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대법원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다’며 최종적인 판단을

<sup>14</sup> Committee against Torture, General Comment No. 2: Implementation of Article 2 by States parties CAT/C/GC/2, 24 January 2009, para. 20-24

<sup>15</sup> More details of past state violences are available in NGO Report(South Korean NGOs Coalition for the Official Visit of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 recurrence, NGO Report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6 June 2022, available at: <https://drive.google.com/file/d/1M0F6JmeUivUVzqDIaAOROheaEGAfGxve/view?usp=sharing>)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6. 한국 정부는 2022년 7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모의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켜 강제동원 해법을 모색하는 듯 했으나, 실제 민관협의회는 과행되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민관협의회의 과행 이후 피해자들과의 상의 노력을 하지 않다가, 2023년 3월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 변제하겠다’는 강제동원 해법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반대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탁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공탁이 거부되었다.<sup>16</sup>

17.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군인·군속으로 동원된 피해자들의 경우, 일본정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한국인 21,000여명을 한국인 유족과 한국 정부에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였다. 군인·군속으로 동원된 한국인들은 유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 등과 함께 하나의 신으로 취급되어 모셔지게 되었고, 합사를 취소해달라는 유족의 요구도 모두 거절당하였다. 심지어 합사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전쟁에서 죽지않고 살아남았음에도, 일방적인 합사로 인해 죽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일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일본인들의 유족에게는 연금을 지급하면서도,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당시에 일본인이었다’며 일방적으로 합사조치를 하고서 보상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체 거부하고 있다.

18. 2015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 산업’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러한 시설들이 조선인, 중국인, 연합군포로 등이 강제노동에 시달린 현장이었다는 비판에 따라, 일본정부에게 “해당 시설의 역사 전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도쿄에 개설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강제노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21년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강제노동의 역사를 포함한 ‘역사 전체’에 대해 해석전략을 마련하라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

<sup>16</sup> The Korea Times, “Revised Japanese textbooks downplay wartime forced labor, catching Korea off guard”, 28 March 2023,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4/06/113\\_348001.html](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4/06/113_348001.html)

19. 일본 정부는 최근 역사교과서에서 ‘강제동원이 법령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한국의 강제노동 문제제기를 ‘근거없는 반일자세’라고 표현하며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 제안권고

- 대한민국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부인하는 제3자 변제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등의 외교적인 노력을 다 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성과 명예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B. 일본군 성노예제

20. 일본 제국주의 군대는 1930년대 초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소녀들과 여성들을 동원하여 성노예로 삼았다.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구타, 고문, 성폭력, 강제 낙태 등에 시달렸으며 일본의 패전 후 전쟁터에 버려지거나 범죄를 은폐하려는 일본군에 의해 학살당했다. 겨우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후유증을 겪으며 살아야했다. 해방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 부인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 차별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다. 1990년 1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설립되고, 1991년 8월 14일에는 한국의 피해생존자 김학순이 첫 공개 증언을 했다. 이후 1990년대부터 피해생존자들과 시민사회는 유엔 인권조약기구 및 특별 절차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지만<sup>17</sup> 일본 정부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1.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무장관은 기습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이하 ‘2015 한일합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sup>17</sup> Notable Reports from the United Nations during the 1990s;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Ms. Radhika Coomaraswamy,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5/85, E/CN.4/1996/53/Add.1, February 5, 1996.

- United Nations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Final Report Submitted by Ms. Gay J. McDougall, Special Rapporteur, E/CN.4/1998/13, June 22, 1998.



선언했다.<sup>18</sup>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피해자들의 참여와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합의에 강력하게 반발했고,<sup>19</sup> 고문방지위원회를 포함한 다수의 유엔 인권기구 들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2015 한일합의’를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sup>20</sup> 그럼에도 당사국은 ‘2015 한일합의’를 공식 입장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sup>21</sup>

22.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피해자들이 2016년 12월 28일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일본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sup>22</sup> 재판부는 “국제법 체계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도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일본국의 국가면제를 배척했다. 국제관습법 이론을 재정립한 역사적 판결이자,<sup>23</sup> 오랫동안 정의를 추구해 온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승리다.

23. 그러나 판결 이후 당사국은 판결 이행을 위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재판 과정 동안 한번도 대응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가 판결 이행은 커녕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sup>24</sup> 당사국은 판결에 대한

<sup>18</sup> Announcement by Foreign Ministers of Japan and Republic of Korea at the Joint Press Occa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https://www.mofa.go.jp/a\\_o/na/kr/page4e\\_000364.html](https://www.mofa.go.jp/a_o/na/kr/page4e_000364.html), December 28, 2015.

<sup>19</sup> “Meeting with the Victims of ‘Comfort Women’... Explaining the Agreement Process”, YTN, <https://www.youtube.com/watch?v=GhJZO4AYPnw>, December 29, 2015.

<sup>20</sup>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C/JPN/CO/7-8/para 28.-29, 2016.

-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C/KOR/CO/3-5/para. 47, 2017.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C/JPN/CO/10-11/para. 27, 2018.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C/KOR/Q/9/para. 10, 2023.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Fabián Salvioli, A/HRC/54/24/Add.1/para. 84, 2023.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2024,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112th Session, p.395 2024.

<sup>21</sup> - The Fourth Universal Periodic Review Cycle of the Republic of Korea, UN Web TV,

<https://webtv.un.org/en/asset/k1b/k1b7mk3j0q>, January 26, 2023.

- Comments by the Stat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Fabian Salvioli, on his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A/HRC/54/24/Add3. Rev.1/para. 46, 2023.

<sup>22</sup> To read the full ruling, note the link below

. Seoul High Court The 33rd Civil Chamber Judgement, Case No. 2021 Na 2017165 Compensation for Damage (Others),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_work;jsessionid=CUsrTumGvfq0WO3eOiPRKzRb3R%20AparnLoyDwPsfAWaOeMDJIn1vvQ0yFlsh2tIPo.BJEUWS04\\_servlet\\_SCWWW?gubun=44&searchOption=&se%20archWord=&seqnum=25497](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_work;jsessionid=CUsrTumGvfq0WO3eOiPRKzRb3R%20AparnLoyDwPsfAWaOeMDJIn1vvQ0yFlsh2tIPo.BJEUWS04_servlet_SCWWW?gubun=44&searchOption=&se%20archWord=&seqnum=25497)

<sup>23</sup> The recent CEDAW concluding observations on ROK also confirmed the implications of the ruling.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Nin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EDAW/C/KOR/CO/9/para.30, June 3, 2024.

<sup>24</sup> For instance, on the day of the ruling, the Japanese government released the foreign affairs statement that the ruling is “deny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tate immunity under international law” and “is clearly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agreements between two countries” such as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o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1965 and the “2015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It stated that the ruling is “extremely regrettable and absolutely unacceptable.” Therefore, it “strongly urges the ROK to immediatel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medy the status of its breaches of international law on its own responsibility as a country.” Regarding the Judgment of the Seoul High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어떠한 공식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의 거친 항의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한일 양국 정부가 확인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sup>25</sup>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4. 현재(202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9명 뿐이다.<sup>26</sup> 이들 피해자 모두가 고령이므로 시급히 배상권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sup>27</sup> 당사국은 위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마땅한 법적 배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안권고

- 당사국은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 피해자 명예회복을 포함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이 피해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과 조치를 취하라.
- 당사국은 피해자 중심 원칙에서 어긋난 ‘2015 한일합의’를 파기하고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심리적 상처 치유를 보장할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라.

### C. 제주 4.3 학살

25. 제주 4.3 사건은 1947. 3. 1. 제28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제주도 군중이 미군정의 실정을 비판하는 가두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의 말에 아이가 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러 모인 시민들을 향해 경찰이 발포하여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으면서 시작되어 그로부터 1954. 9. 21.까지 중산간 마을의 95% 이상을 불태우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제주도 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3만 여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26. 그 후 제주 4·3사건은 오랫동안 은폐, 왜곡되었으나,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진상

---

Lawsuit Filed by Former Comfort Women and Others, Statement by Foreign Minister Kamikawa Yok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https://www.mofa.go.jp/press/release/press1e\\_000489.html](https://www.mofa.go.jp/press/release/press1e_000489.html), November 23, 2023.

<sup>25</sup> On November 26, 2023, during the Foreign Minister summit of ROK and Japan, the Japanese Foreign Minister Kamikawa Yoko told ROK Foreign Minister Park Jin that the Seoul High Court ruling was “extremely regrettable.” And she urged the ROK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Jesse Johnson, “Kamikawa Conveys ‘Comfort Women’ Stance to South Korean Envoy”, The Japan Times,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3/11/26/japan/politics/japan-south-korea-china-foreign-ministers-bilateral-talks/>, November 26, 2023.

<sup>26</sup> Ko Byung-chan, “Another Death Leaves Only Nine Surviving Korean ‘Comfort Women’”, *Hankyoreh*,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90418](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90418), May 3, 2023.

<sup>27</sup>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Fabián Salvioli, A/HRC/54/24/Add.1/para. 85, 2023.

규명 노력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정부때인 2000. 1. 12.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사건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 작업이 시작되었고, 2003. 10. 15. 정부의 공식보고서인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2003. 10. 31. 제주 4·3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하였다.

27.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은 4·3 사건법에 의거 재심 청구 절차를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고, 1인당 최고 9천만 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게 되었으며, 제주 4·3 사건 피해로 인해 호적이 없거나 잘못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게 되었다.

28. 제주 4·3 사건에 대해 국가 폭력을 인정하며 대통령이 사과하고 4·3 사건법이 제정되었으나, 가해자들의 처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가해자들이 제주 4·3사건에서 벌인 진압작전으로 받은 서훈 또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미군정의 제주 4·3 진압작전에 직간접적인 개입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왔고,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 또한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다.

#### 제안권고

- 제주 4·3 사건 가해자를 처벌하고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
- 제주 4·3 사건에서 발생한 미국정부 등의 책임 등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라

## D. 국가폭력

29. 한국사회에서는 다양한 과거사 사건이 발생했다.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이 2022년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대표적인 과거사 사건으로는 형제복지원,<sup>28</sup> 선감학원,<sup>29</sup>

<sup>28</sup> Brothers' Home is a case in which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rphans found on the street in the 1970s and 1980s in the name of leading the tramp were quarantined, assaulted, threatened, imprisoned, forced labor, and abused. A total of 38,000 people were detained in the Brothers' Home from around 1975 to 1985, and the number of deaths during the above period reached 657..

<sup>29</sup> Seongam Academy was established in 1942 in Seongam-do, Bucheon-gun, Gyeonggi-do, during the Japanese imperial occupation. Children detained at Seongam Academy were assaulted, threatened, imprisoned, forced to

삼청교육,<sup>30</sup> 서산개척단,<sup>31</sup>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sup>32</sup> 강제징집 및 녹화/사회정화 사업,<sup>33</sup> 조작간첩,<sup>34</sup>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사건<sup>35</sup> 등이 있다.

30. 위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서는 2기 진실과화해위원회(이하 ‘2기 진화위’)에서 조사를 일부 진행하고 있다. 다만 2기 진화위가 내리는 진실규명결정은 진정을 접수하지 않은 당사자에게까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2기 진화위는 2022. 12. 9. 진정접수를 마감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진정을 접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2기 진화위원회에 조사진행중인 사건도 9,899건으로 남은 1년 정도의 활동기간 내에 조사가 전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31. 과거사 피해자들은 2기 진화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더라도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진화위에 진정을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경우, 입증해야 할 자료의 부족, 소멸시효의 문제 등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진화위를 통해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과거사 피해자들은 특별법의 제정 또는 기존에 제정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

labor, or even died, lost, injured, and mentally disabled due to these offences. It is estimated that about 5,759 children were detained at Seongam Academy and hundreds of related deaths were reported

<sup>30</sup>Samcheong Concentration Camp was a South Korean concentration camp set up 1980s under the rule of military dictator Chun Doo-hwan. More than 40,000 people were forced to go to the camp. 60,000 people were arrested without warrants, and about 40,000 people were sent to the camp.

<sup>31</sup> In the process of reclaiming abandoned salt farms through mass relocation of vagrants and orphans from Seosan as part of the “Social Prosperity Project” in the early 1960s,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committed, and included forced detention, forced labor, forced marriages, beatings, and confinement.

<sup>32</sup> During the Korean War, there were massacres of suspected communists and those suspected of cooperating with the People's Army.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at least hundreds of thousands of civilians were massacr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U.S. military, and the People's Army without due process.

<sup>33</sup>Forced conscription was made for college students whose academic records were forcibly changed due to expulsion, suspension, and supervised leave for participating in the student movements from September 1980 to November 1984. Students were forcibly conscripted regardless of their will. The greening project was a project to investigate student movements and organizations, and to ‘purify’ the subjects’ thoughts and ideologies, conducted from September 1982 to December 1984 under the name of “prevention of left-leaning pollution.” It was a project that forced soldiers (students) who were considered to be ‘purified’ to espionage and collect student movement information from their alma mater. The exact number of victims of forced conscription, greening project and purification operation are still unknown, but is estimated at more than 2,500 persons.

<sup>34</sup> The “abducted and returned fishermen from North Korea” refers to those who were kidnapped by North Korean patrol boats while fishing in the East Sea and the West Sea, or who lost direction due to fog and went to North Korea, stayed there for several days to years and then came back to South Korea. It is known that from 1954 to 1987, 459 ships, around 3,600 fishermen were abducted to North Korea. The returned fishermen were investigated by investigative agencies after receiving joint interrogation, and most of them were prosecuted and punished for violating the Fisheries Act and the Anti-Communist Act.

<sup>35</sup>President Park Chung-hee exercised the right to execute emergency measures nine times during his presidency to oppress the student movements for democracy and the general public. During this process, countless college students, intellectuals, journalists, opposition politicians, and ordinary citizens were arrested, illegally detained, beaten, harassed, and prosecuted.

32. 2기 진화위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를 권고했지만, 국가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기 진화위로부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일부 과거사 피해자들은 여전히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제안권고

- 대한민국은 진실과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과거사 피해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공식적,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과를 공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제2기 진화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모든 인권침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위원회에게 제한없는 직무범위를 보장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모든 과거사 피해자들이 제2기 진화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언제든지 진실규명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완전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 법적 및 행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기억과 추모를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해소할 수 있는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과거사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과 책임을 묻는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고, 과거사 사건 가해자들에게 수여된 서훈취소 등의 절차를 시행하고 공개해야 한다.

## E. 해외입양

33. 독재와 권위주의적 정부 시기 시스템적으로 발생한 불법입양은 아동인신매매와 다름없는 문제로 국가 차원에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sup>36</sup>

34. 대한민국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해외입양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해외입양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총 17만명에 달하는 아동을 미국,

<sup>36</sup>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HRC/34/5, 27 December 2016 15

캐나다 등 14개 국가로 입양을 보냈다. 특히 대한민국 해외입양이 많이 이루어진 시기는 1970년대와 1980년대로 독재와 권위주의적 정부 주도로 해외입양이 추진되었다. 해외입양은 민간 입양기관에 의해 양부모가 해당국가에 방문하지 않고 아동을 입양할 수 있는 대리입양의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양부모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민간 입양기관은 출생등록 서류 등을 위조하고, 아동을 다른 국가로 입양보내기도 했다.<sup>37</sup>

35. 결과 해외입양된 아동이 부적절한 가정에 입양되어 살해되거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폭력을 당했다. 과양되고, 국적조차 취득하지 못한 채 추방되는 사례도 발생했다.<sup>38</sup> 실제로 미국으로 해외입양된 아동 중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아동은 2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불법입양에 대한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의 책임자들을 처벌한 사례는 없고, 해외입양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배상 등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가의 공식적인 책임인정 및 사과도 부재한 상황이다. 나아가 해외입양된 아동들은 제도의 부재로 자신에게 이루어진 불법입양에 대한 정보, 친부모에 대한 정보 등에 접근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제안권고

- 대한민국은 독재와 권위주의시기 발생한 해외입양의 진상을 조사하고 국가기관과 민간입양기관의 책임자들이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공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과를 발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해외입양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정체성 회복, 재할, 존엄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해외입양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해외입양 피해자들의 국적취득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sup>37</sup> The Korea Times, "'Proxy adoption,' the IR-4 visa and US citizenship for adoptees from Korea", 24 July 2021,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4/05/715\\_312627.html](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4/05/715_312627.html)

<sup>38</sup> CNN, "Americans adopted him; now he's facing deportation", 7 November 2016, <https://edition.cnn.com/2016/11/04/us/adam-crapser-deportation/index.html>

## F. 아동학대

36.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하는 고문 및 학대(torture and ill-treatment)의 대표적 유형이다.<sup>39</sup> 국가는 고문방지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아동에 대한 고문 및 학대를 예방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아동에게 구제, 완전한 재활,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한다.<sup>40</sup>

37.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아동학대<sup>41</sup>사례 건수는 2018년 24,604건, 2019년 30,045건, 2020년 30,905건, 2021년 37,605건 그리고 2022년 27,971건이고, 아동학대 사망으로 신고접수된 건수는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 2022년 50명이다.<sup>42</sup> 이러한 통계는 국가가 확인한 건 수일 뿐, 드러나지 않는 학대와 아동 사망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8. 아동에 대한 학대를 비롯한 고문은 국가의 책임 영역이고, 특히 재학대 및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절차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이며, 완전한 추모를 위해서도 필요하다.<sup>43</sup>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아동사망 검토 제도(Child Death Review)<sup>44</sup> 를 비롯해,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는 메커니즘이 부재하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알려졌을 때, 민간 주도로 작성된 보고서가 있을 뿐이다.

39. 대한민국 국회는 2020년 10월 13일 입양된 아동이 세 차례 아동학대신고에도 불구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통령 산하의 한시적 기구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회기종료로 폐기되었다.<sup>45</sup>

---

<sup>39</sup>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terim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Domestic violence and the prohibition of torture and ill-treatment, A/74/148, 12 July 2019.

<sup>40</sup> Committee against Torture, General comment no. 3: Implementation of article 14 by State parties, CAT/C/GC/3, 13 December 2012, para. 20-25.

<sup>41</sup> Including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sexual abuse, additional typ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sup>42</sup>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Statistics of child abuses

<sup>43</sup> Economic and Social Council, Updated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E/CN.4/2005/102/Add., 18 February 2005, principle 2.

<sup>44</sup>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Introduction of a Child Death Review System for Prevention of Child Death, 2021.

<sup>45</sup> Propose Bill of the Special Act on Truth Seeking of Child Abuses Cases, such as Yangcheon Child Abuse Deaths, and Preparation of measures to prevent child abuses

### 제안 권고

- 대한민국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등에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중대한 아동학대 및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실효성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 배상 및 제도적 개혁을 증진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V.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의 권리

40. 부산 영화숙/재생원은 1950~1960년대 부산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집단수용 시설이었다. 1960년대 후반 한 해 1200여명을 수용할 정도였다. 영화숙/재생원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많은 이들이 심각한 고문을 당했고, 사망 사실도 감춰졌다. 피해자라고 알리는 이들이 매우 적는데, 많은 이들이 이미 사망했거나 지금도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신청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탓이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같은 심각한 국가폭력 사안이지만 최근까지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한 사건으로 꼽힌다.

41. 이는 시설 수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고 2023년, 국회에서 유엔 인권 기준을 기반으로 한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보상법>이 발의되었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수용 시설 사건에서의 명확한 책임 규명과 구체적 배보상 논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2. 이러한 책임 규명의 부재는 현대 한국사회 내 시설화를 영속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시설 수용은 본 협약을 비롯한 다양한 유엔 인권 기준에 비춰봤을 때 고문 또는 학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약 13만 명의 정신적/심리사회적 장애인, 노숙인 등이 수용되어 있다<sup>46</sup>. 이는 한국 정부가 시설 수용이라는 고문 및 학대의 장본인(author)이자 재발방지 의무를 방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3. 정부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고문과 학대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현재까지도 시설 수용은 강제/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sup>46</sup> Approximately 6,400 individuals were housed in rehabilitation and care institutions for the homeless (as of 2021), 28,565 in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5,250 in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about 75,000 in psychiatric hospitals (as of 2022).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67.9%는 비자발적으로 입소했다고 답했고, 자의로 시설에서 나가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72%에 달했다<sup>47</sup>.

44. 뿐만 아니라, 시설 수용자 피해자들은 다양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이나 기본권의 실질적 손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장애인 시설 수용자 중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46%에 달하며, 0.97%만이 자신의 통장을 직접 관리한다고 답변하였다<sup>48</sup>. 최근 한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탈시설 장애인의 시설 수용 경험은 사회자본과 개인의 고립감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9</sup>.

## 사례

45. 시설 수용 생존자들이 만든 ‘탈시설장애인연대’ 대표 박경인은 시설 수용 정책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편지를 공개했다<sup>50</sup>.

“저는 탈시설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입니다. 미혼모 시설에서 태어나 23년 동안 시설에서 살았고 5년 전에 자립했습니다. (...) 장애인은 시설이든 정신병원이든 요양원이든 내 의견과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정신장애가 있거나 자기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저도 자립하기 전까지는 일곱 군데 시설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니다. (...) 저를 이 시설 저 시설로 옮긴 것에 대해 사과받고 싶습니다. 제가 외롭게 살도록 만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설수용피해생존자 보상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시설수용피해생존자 보상법’이 사람들에게 ‘모두가 같은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걸’ 알려주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장애인을 시민으로 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막아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더 이상은 그 어떤 장애인도 외롭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sup>47</sup>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7. Survey of people living in institutions with severe mental disabilities.

<sup>48</sup>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22.2.10. Recommendations for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reforms following the inspection of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up>49</sup> Jeon Geun-bae. 2024.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Body Function, Experience of Institutionalization, Sensory Level of Public Support, Social Capital, and Isolation of the Disabled People. Daegu University.

<sup>50</sup> Testimony hearing urging an apology for 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2023.11.3.

## 제안권고

- 대한민국은 시설수용 정책으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국가폭력 및 책임으로 인정하고 입소 시기에 상관없이 모든 시설 수용 피해자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비롯한 재활 방안을 비롯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배, 보상 방안 및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시설수용 피해 진상규명 및 배, 보상을 위한 상설독립기구를 설립하고,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탈시설화 정책을 가속화해야 한다.

## VI.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 A. 구제를 받을 권리(Right to redress)와 국가의 의무

46. 대한민국 헌법은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보장되는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진실, 정의, 배상의 권리를 모두 포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헌법 제10조 또는 제37조 제1항을 통해 이를 도출할 수 있지만, 법원이 해석을 통해 해당 권리를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다. 가령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고문방지협약으로부터 과거사 피해자들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형성 하고 있다.

47. 과거사 또는 시설수용과 관련된 개별 법률은 저마다 피해자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피해자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부당한 체포, 구금,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들을 피해자에서 제외하였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사망한 사람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 법률들 모두 피해자의 범위 안에 피해자의 혐의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자백을 강요받은 증인, 참고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48.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는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관련하여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일본의 군함도, 러시아의 사할린 등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신원과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안 권고

- 대한민국은 과거사와 시설수용 피해자들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사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범위와 구제 내용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과거사 및 시설수용 관련 개별 법률을 제, 개정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과거사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 인권침해의 진상조사를 위한 외교적 보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 B. 사과, 기억과 추모

49.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기관장들이 일부 소수의 과거사 사건에 대해 사과한 사실은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과거사 사건에만 국한된다는 점, 사건 당시 책임자들이 직접 사과는 하지 않는다는 점, 그 내용 등이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대부분의 경우 과거사 피해자들이 법원을 통해 고문 및 학대행위를 인정받더라도 국가 차원의 사과가 제공되지 않는다. 법원이 개별 재심사건에서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판결문이나 조서에 기록하지 않는 개인적 사과이기 때문에 사법부 자체의 공적 사과로 보기는 어렵다.

50. 대한민국의 기록물에 관한 법률들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기록물을 특별히 분류하고 있지 않다.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기록물은 다른 공공기록물과 동일한 수준에서 취급, 관리, 활용되고 있다.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기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고, 많은 수의 인권침해 관련 기록이 비공개로 분류되고 있다. 나아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와 기억을 위해 필요한 국가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통합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안 권고

- 대한민국은 진실규명되는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서 누락없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과를 해야하고, 이를 공적인 기록에 남겨야 한다.

- 대한민국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관리, 활용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중대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비밀로 분류된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 기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추모와 기억을 위해 필요한 국가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C. 효과적인 진정 및 수사 메커니즘

### 진실위원회(TRC)

51.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5년 12월 부터 2010.까지 약 4년간 한시적으로 진실규명활동을 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조사규모의 방대함과 활동기간의 제한으로 11,175건의 진실규명 신청만을 접수하여 8,450건에 대해서만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52. 이후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되었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0년 12월 출범했다. 그러나 2기 위원회 역시 5년(연장기간 1년 포함)동안만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조사기구로 규정되었다. 조사기간의 부족과 짧은 접수기간으로 2기 진화위는 접수된 사건 조차 전부 조사못할 우려가 있다.

### 국가인권기구(NHRI)

53.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에 설립된 기구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과거사 또는 시설수용의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진정사건을 각하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사와 시설수용 사건을 심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sup>51</sup>

법원: 재심제도

54.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재심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의 의미를 당시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의 발견으로 축소해석하고, 진술의 반복 등을 새로운 증거로 보지 않고 있다.<sup>52</sup> 민사소송법은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재심사유로 정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조약기구의 개인진정에 대한 견해 역시 재심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재심제기기간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민사와 행정 영역에서의 재심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55. 형사 재심사건의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재심개시결정까지 최장 7년 12일이 소요되었다.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더라도 검사가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심의 개시는 더욱 지체될 수 있다. 참고로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최장 9년 32일, 재항고 기각결정은 최장 3년 182일이 소요되었다.<sup>53</sup> 한편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에게 직권재심의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에 소극적이다. 검찰은 적어도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등을 통해 진실규명된 과거사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사건에 대해서 직권 재심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56. 형사재심제도에서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법원은 대다수의 과거사 사건 재심재판에서 피해자 또는 참고인들의 구체적 진술에도 불구하고 물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고문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취소

---

<sup>51</sup> Article 32 (Rejection of Petition, etc.) (1) The Commission shall reject a petition which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4. In case said petition is filed after one or more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facts causing the petition happen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ny case in which the prosecution or civil prescription with respect to such facts is not completed and which the Commission determines to investigate;

<sup>52</sup> Supreme Court, 2010 MO 363, 18 April 2013

<sup>53</sup>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17 JINJUNG 0744400 etc, 5 November 2018.

5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sup>54</sup>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에서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심판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 불법적인 판결은 여전히 취소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제안 권고

- 대한민국은 제2기 진화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모든 인권침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위원회에게 제한없는 직무범위를 보장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생한지 1년이 도과한 인권침해사건도 조사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등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형사 재심제도를 신속히 처리하고 검찰의 즉시항고 및 재항고권을 폐지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등을 통해 진실규명된 과거사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사건에 대한 직권 재심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피해자중심적 접근에 기반한 법원의 구제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구제절차를 통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D. 구제를 가로막는 제도

### 시효

58. ‘과거사 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도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sup>54</sup>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8 (Grounds for Request) (1) Any person whos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e infringed due to exercise or non-exercise of the governmental power, excluding judgment of the courts, may request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Provided, That if any remedial process is provided by other statutes, no one may request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without having exhausted all such processes.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고 있다. 나아가 기존에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소멸시효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시효로 인해 기각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59. 형사소송법은 2015년 개정을 통해 사람을 살해한 범죄의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sup>55</sup> 그러나 법 개정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지 않는다.<sup>56</sup> 한편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도 공소시효를 배제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다.

## 사면

한편 사면법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sup>57</sup> 그 결과 고문 및 학대행위 범죄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이 된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삼청교육대 사건, 5.18 민주화운동 학살 사건 등 수많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가대통합을 명분으로 사면되었다.<sup>58</sup>

## 법률구조

61. 법률구조법은 민사·가사·행정, 헌법소원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는 법률구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형사사건 등에 재심사건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과거사 피해자들이 재심 등에 있어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과거사 사건의 직접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면제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

<sup>55</sup>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53-2(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Prescription for Public Prosecution) The prescription for public prosecution prescribed in Articles 249 through 253 shall not apply to a crime of killing a person (excluding accessories) which is punishable with death penalty.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13454, Jul. 31, 2015]

<sup>56</sup> Criminal Procedure Act ADDENDA <Act No. 13454, Jul. 31, 2015>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Prescription for Public Prosecu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53-2 shall also apply to crimes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the prescription for public prosecution for which has yet to expire.

<sup>57</sup> **Amnesty Act Article 9 (Enforcement of Special Amnesty, etc.)** Special amnesty, reduction of punishment and rehabilitation for a specific pers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66956&lang=ENG](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66956&lang=ENG)

<sup>58</sup> CNN, “Former South Korean leaders freed from jail”, 22 December 1997, <http://edition.cnn.com/WORLD/9712/22/korea.presidents/>

## 재활

6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2월 7일에 제정되었고, 2022년 6월 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과거사 피해자들의 재활을 위한 센터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위 법률은 국가폭력의 정의를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전에 발생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63. 법률상으로는 분원을 설치, 지정, 운영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광주, 제주도 2곳만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 단위에 존재하는 피해자들의 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된다. 센터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인력 등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치유대상자의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증상의 치유·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을 주 사업으로 하는데, 취업지원 등 피해자들의 자활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트라우마센터에 지원하는 예산과 인력을 감축했다.<sup>59</sup>

## 배상

64.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배상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과거사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경우 소멸시효의 적용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높은수준의 입증책임으로 인해 배상이 기각되고 있다.

65.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관련 판결을 분석해 보면,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모호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청구하는 위자료에서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고 있다. 법원은 사망하거나 구금된 과거사 피해자들의 일실수입(잠재적 소득)을 일률적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까지의 도시일용노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최저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형평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구금기간이

---

<sup>59</sup> The Voice of Jeju, "The National Trauma Healing Center, 1/3 of the national expenditure, is a stray bullet, and the 'fire on the foot' of the Jeju branch", 3 September 2023,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8847> ; Hankyoreh, "'May 18 in words only'...The government drastically cuts the budget and manpower of Gwangju National Trauma Center", 31 March 2024,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34571.htm> |



짧은 피해자들, 피해자들의 가족들 등의 위자료를 현저히 낮게 인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법원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금액을 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 배상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 제안권고

- 대한민국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시효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시효로 인해 구제가 기각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사면을 배제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과거사 피해자들(가족 등 포함)이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치유대상자에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포함되고, 센터의 사업에 자활도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트라우마 센터의 분원을 설치, 관련 인력의 보충 등을 위해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에게 배상, 보상, 만족, 재활을 포함한 완전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 법적 및 행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배상을 보장해야 한다.

## E. 책임

66. 의문사사건, 납북귀환어부조작간첩사건, 박정희대통령시기긴급조치사건, 강제징집, 녹화사업및선도공작, 서산개척단사건, 해외입양사건 등 대부분의 국가폭력사건에서 책임규명은 이루어지지않았다.

67. 형사 재심 및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드러난 검찰, 경찰, 국정원 수사관 및 군인 등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 또는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효와 사면 등으로 불처벌이 용인되기도 한다. 정부가 종종 가해자들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부는 그 취소사유를 비공개하여 피해자의 만족을 저해하고 있다.

68. 한편 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인한 법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며 과거사 피해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오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 제안권고

- 대한민국은 과거사 및 시설수용 가해자에 대한 범죄수사, 기소 및 제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규명절차 또는 기소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 F. 시설화 정책

### 집단수용시설 법률 유지

69. 한국은 관련 법령이 부족했던 1940년대부터 장애인, 아동, 여성, 부랑인 등을 수용하던 시설이 한국 전쟁 이후 국·내외 민간 지원을 통해 확산되었다. 70년대부터는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체계화하는 법령<sup>60</sup>을 제정하면서 사실상 국가가 지원하고 민간이 대리 운영하는 시설로 체계화되었다. 2000년대부터 선감학원(1946-1982), 형제복지원(1975-1987) 등 피해생존자의 투쟁으로 정부와 시설의 강제수용과 심각한 인권유린이 국내외에서 결정된 바 있다<sup>61</sup>. 하지만 한국은 집단수용시설 내 고문 및 학대 행위를 인지하면서도, 2024년까지도 집단수용시설 근거 법령을 제·개정하여 유지하고 있다.

###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및 책임자처벌 대한 정부 및 운영자의 책임 부재

70.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자의 투쟁으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정부를 포함한 책임자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배·보상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 기구를 한시적으로

<sup>60</sup>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8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nacted on June 5th 1981),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34 (Establish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enacted on April 2nd 1970)

<sup>61</sup> ROK TRC's decision to investigate child abuse case in the Seongam Education Institute. 2020. [https://www.jinsil.go.kr/fnt/nac/selectNotic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710&nttId=31657](https://www.jinsil.go.kr/fnt/nac/selectNotic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710&nttId=31657) 7, ROK TRC's decision to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Brothers' Home. 2022. [https://jinsil.go.kr/fnt/nac/selectNotic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716&nttId=317929](https://jinsil.go.kr/fnt/nac/selectNotic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716&nttId=317929) UN Special Rapporteur on Truth, Justice, and Reparation visited the Seongam Education Intitute memorial center. June 2022. <https://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95181>

운영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기본적인 회복지원은 요원하다. 현재까지도 많은 시설수용피해생존자들이 방치되어 자신의 권리를 공지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시설수용피해생존자들은 공평하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법적 및 기타 구제 등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일부 탈시설한 피해생존자들만이 정부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진실규명 및 배·보상을 위한 투쟁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sup>62</sup>

### 국가의 공식적 사과 부재와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처벌 및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부재

71. 한국은 시설수용 법제도로 인해 현재에도 13만 명이 집단수용되어 있다. 집단수용시설피해생존자들이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며 적극적인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처벌 조항을 포함한 탈시설지원 법률,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자 배·보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국가사과를 촉구하며, 집단수용시설정책 중단을 위한 법률 제정을 권고하였으나<sup>63</sup> 적극적 시설축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했다. 때문에 국가의 예방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여전히 부재하여 후견인 및 시설 관련인에 의한 사실상 강제수용과 타 시설 이송이 지속되고 있다.<sup>64</sup> 이에 과거사피해자들과 동일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생존자들이 향후에도 학대를 유발하는 환경 속에 방치될 수 밖에 없다.

#### 제안권고

- 대한민국은 집단시설수용 정책으로 인한 학대 및 피해를 국가폭력 및 책임으로 공식사과하고, 생존자 중심 접근 방법으로 온전한 회복지원과 배보상 예산과 시스템을 포함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소멸시효 등 피해생존자 차별 법제도를 폐기하고, 정부는 정보접근이 어려운 피해생존자, 불충분한 보상 및 패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생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 입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sup>62</sup> Hankyoreh., “A Survivor of the Brothers’ Home protested on the Gwang-an Bridge for 12 hours: ‘The Government ignores us’”. May 14th 202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1729.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1729.html).

<sup>63</sup> TRC, “Gyeonggi province should plan a just compensation for the Seongam survivors”. March 27th 20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998.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998.html). Hankyoreh

<sup>64</sup>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Status Survey on Disability Abuse.

- 대한민국은시설수용 진상규명 및 피해 배보상을 위한 상설독립기구 설립, 국가의 집단수용시설 정책으로 인한 피해생존자의 현황과 사회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매커니즘등에 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폐기와 탈시설화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탈시설 혐오 및 당사자 낙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